

##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대법원
사건번호	2016두○○○○○	사건유형	조정명령
원고	주식회사 □□□□□ 외 4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외 1
판결선고일	2019. 1. 31.	비고	(1심)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2015.03.20. 원고승소 (2심)서울고등법원 2015누○○○○○ 2016.11.24. 항소기각(원고승소)
사건개요	원고 주식회사 □□□□□ 외 4개 업체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되는 검·인정 교과용도서 출판하는 출판사들로 교육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가격조정명령처분을 받았으나, 처분이 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처분의 근거가 된 조항 및 부칙조항의 위법·위헌성(위임한계 일탈, 소급입법금지 원칙 위반 등)이 있고, 처분 자체의 위법·위헌성(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등)이 있어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함.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청구취지 -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장관이 2014. 3. 27.,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 2014. 4. 21.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교과용도서에 대한 각 가격조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 항소취지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장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주식회사 ■■■■■, 원고 □□□□□□□□의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취지 - 원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이에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		
판결이유	○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각 호의 사유로 검정도서와 인정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가격 조정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도서가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은 물론 그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음이 별개로 인정되어야 함. 이때 가격 조정 명령 대상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그 교과용 도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추정되는 관계로 볼 수는 없음. -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검·인정도서 출판사의 과도한 이득과 이로 인한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이 사건 조항 각 호가 정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항상 출판사가 과도한 이득을 얻는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출판사가 실제로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사이의 상관관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결정한 가격 또는 희망하는 가격 자체는 객관적으로 보아 부당한 가격이 아닐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처럼 이 사건 조항 각 호의 사유와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는 개념적으로 구별되고 그 상관관계가 곧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위 각 호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여 위 부당성이 당연히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음.</li> <li>○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제시의무 위반한 절차적 하자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심은 이 사건 조항 제3호(예상 발생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은 경우)를 사유로 한 가격 조정 명령의 경우, 원고들이 스스로 적어낸 예상 발행부수와 실제 발행부수를 알고 있었고, 나아가 피고 장관이 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기준부수, 결정방식 등 조정가격 산정방식과 내역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음을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위반의 절차상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li> <li>- 반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 사유(제조원가 중 도서의 개발 및 제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하지 아니한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 의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고들로서는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당해 가격 조정 명령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보아 절차적 하자가 인정됨.</li> </ul> </li> <li>○ 공공재인 교과용 도서 가격의 적정성과 안정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및 학부모의 부담 증가 완화의 필요성 등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li> </ul>
결 론	<p>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p>